

【 7 】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0. 2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농지법 개정(1999.3.31 법률 제5948호)시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동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함.
- 나.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한다

제8조중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자격”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임 차 인 대 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임 대 인 대 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자 경 농 대 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위 사람을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리 장 주 소

성 명

첨부서류 : 후보자 (임차인 대표, 임대인 대표, 자경농 대표)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 ----- -----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 ----- ----- 농지취득자격 ----- -----
제11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	(삭제)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農地法

農地를 貸貸하거나 使用할 수 없다.

1. 第6條第2項第1號 · 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農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貸貸 또는 使用貸하는 農地
3. 疾病, 徵集, 就學, 選舉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農地

第23條 (貸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貸貸借 또는 使用貸借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第24條 및 第25條 刪除 <99·3·31>

第26條 (默示의 更新) 貸貸人이 貸貸借期間 만료 3月전까지 貸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貸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貸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貸貸借한 것으로 본다.

第27條 刪除 <99·3·31>

第28條 (貸貸人の 地位承繼) 貸貸農地의 讓受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貸貸人の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第29條 (國 · 公有農地의 貸貸借에 대한 特例) 國有財產法 및 地方財政法에 의한 國 · 公有財產인 農地에 대하여는 第23條 · 第26條 및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第4章 農地의 보전등

第1節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 運用

第30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①市 · 道知事은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 · 보전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農地法

沿革

公布番號	4817	公布日子	1994. 12. 22	題名	農地法
〔新規制定〕					
<p>農業의 國際競爭力を 확보하고 農村의 活力を 증진하기 위하여 1949年 農地改革法 制定이후 零細·生計農保護爲主로 운용되어 온 農地制度를 改編하여 다양한 農業經營體의 육성을 지원하고 農地流動化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云來 및 이용에 관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는 등 農業 現實에 부응하고 그 構造改善을 效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農地制度로 발전시키는 한편, 農地改革法·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農地賃貸借管理法·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등 여려法律에 복잡하게 分散 規定되어 있는 農地關聯法律과 制度를 統合·整備함으로써 農地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法律을 制定하려는 것임.</p> <p>① 農地는 國民의 식량공급과 國土環境保全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資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農業의 生產性을 높이는 방향으로 所有·이용되어야 하며 投機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을 정함으로써 향후 農地政策의 指標가 되도록 함.</p> <p>② 農地는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所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農業技術開發을 위한 試驗·研究를 하는 者, 종묘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產하는 者 및 農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資本의 農業參與를 유도하고, 農業 및 農業關聯產業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능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p> <p>③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 所有上限은 营農規模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禁止하고,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 所有上限은 3萬제곱미터를 유지하여 投機的目的의 農地所有를 방지하되, 栽培作木, 經營能力, 農地의 集團化, 農業機械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萬제곱미터이내의 農地所有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p> <p>④ 農地를 取得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農地管理委員會 委員 2人이상의 확인을 받아 市·區·邑·面長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도록 함.</p> <p>⑤ 農地所有者는 徵集·疾病·就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農作業의 전부를 委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労動力이 부족한 경우에는 農作業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도록 함.</p>					

(주 1)

第23編 農業 第2章 農地 農地法

公布番號	5948	公布日子	1999. 3. 31	題名	農地法中改正法律
〔一部改正〕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所有上限의 범위를 세대당 3萬제곱미터에서 5萬제곱미터로 上向調整하고, 農地의 賃貸借期間 및 賃借料上限制度를 廢止하려는 것임.

第23編 農業 第2章 農地 農地法

行하는 地方自治團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農業生產者團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벌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21條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贈與 또는 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節 農地의 貸貸借等

第22條 (農地의 貸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農地외에는 그 農地를 貸貸하거나 使用貸할 수 없다.

1. 第6條第2項第1號 · 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農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貸貸 또는 使用貸하는 農地
3. 疾病, 徵集, 就學, 選舉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農地

第23條 (貸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貸貸借 또는 使用貸借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方法을 원칙으로 한다.

第24條 (貸貸借의 기간) ①貸貸借의 기간은 1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경우나 農業用施設을 설치하여 農作物을 耕作하는 경우에는 3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貸貸借의 기간은 그 契約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을準用한다.

③貸貸借의 기간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短期間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 (貸借料의 上限) ①貸借料의 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地域別 · 農作物別로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契議를 거쳐 市(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 郡의 條例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料의 上限을 초과하여 貸貸借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第26條 (默示의 更新) 貸貸人이 貸貸借期間 만료 3月전까지 貸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貸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주 1)

4. 第24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檢查試料採取 또는 資料 및 서류의 提出要求를 거부하거나 惡害한 者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過怠料) 第11條第4項의 规定을 위반한 者는 2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32條第1項중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를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肥料生產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 또는 中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规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產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1條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
하여 肥料生產業의 登錄 또는 肥料輸入業의 中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產業資源部提官에게 肥料生產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 施行
후 3月이내에 관할 市·道知事에게 肥料生產業登錄證의 제고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肥料管理法 改正理由

肥料產業의 行政規制을 廢止 또는 緩和하고, 地方化時代에 부응
하여 일부 行政權限을 移讓하는 한편, 現行 规定의 운영상 낙타
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肥料生產·販賣·輸出 및 輸入命令制와 肥料最高價格 指定制

를 각각 廢止함(現行 第5條第3項·第4項 및 第9條 削除).

나. 肥料輸入業을 登錄制에서 中告制로 緩和하고, 肥料販賣業의 中
告制을 廢止함(法 第11條 및 第12條).

다. 工業用 또는 飼料用肥料의 農業用으로의 販賣禁止·肥料의 보
증표시 부정사용금지, 肥料의 異物質混入禁止 및 허위선전금지
등을 廢止하고, 肥料의 品質管理 기준을 보완함(法 第3條, 第14
條 내지 第17條).

*시행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1999. 7. 1.)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農地法中改正法律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령 김 대 중 回

1999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김성훈
농림부장관

◎法律 第5,948號

農地法中改正法律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本文중 “3萬제곱미터”를 각각 “5萬제곱미터”로 하고, 同項
第2條를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3萬제곱미터”를 “5萬제곱미터”로 한
다.

第8條第1項중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을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
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
에 한한다)”으로 한다.

1999. 3. 31. (수요일)

2014107호

二
四
五
六
七
八

1999. 3. 31. (수요일)

第9條第2號中 “6月以上”을 “3月以上”으로 한다.

第10條第1號中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第11條·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이라 한다.

第16條第1項中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은 후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를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의 審議”로 하며, 同條第2項中 “수립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은 후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수립하여 이를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16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項을 削除한다.

③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补完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事業施行者에게 同計劃의 补完을 요구할 수 있다.

第17條第1項中 “同 計劃의 승인을 한 때에는”을 “同 計劃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补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补完이 완료된 때)에는”으로 하고, 同條第2項中 “第16條第5項 各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農地”를 “第16條第4項第2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農地”로 하며, 同條第3項中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승인을 얻은 文書”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文書”로 한다.

第19條第7項·第24條·第25條 및 第27條을 각각 削除한다.

第29條中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 以降 第28條”를 “第23條·第26條 및 第28條”로 한다.

第48條第3號을 削除한다.

第56條의 項目 “(報告 및 檢查 등)”을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로 하고, 同條第1項中 “事業施行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農地의 所有·去來·이용 또는 轉用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을 “事業施行者の 農地의 所有·去來·이용 또는 轉用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며, 同條第3項中 “보고·檢査 또는 調査의 증표”를 “檢査·調查 및 증표”로 한다.

第58條中 “農地의 轉用을 申告하는 者”를 “農地의 轉用申告를 하는 者”,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로 한다.

第64條를 削除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農地法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

農業振興地域 밖의 農地所有上限의 범위를 세대당 3萬제곱미터에서 5萬제곱미터로 上向調整하고, 農地의 賃貸借期間 및 賃借料上限制度를 廢止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1991. 1. 4]
조례 제1339호

개정 1991. 1. 26 조례 제1362호

〃 1993.12. 9 조례 제1475호

〃 1997.12. 1 조례 제1652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천읍 농지관리위원회
2. 주내면 농지관리위원회
3. 온현면 농지관리위원회
4. 남 면 농지관리위원회
5. 광적면 농지관리위원회
6. 백석면 농지관리위원회
7. 장흥면 농지관리위원회

제 3 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4.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5.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법 제51조 및 영 제71조 규정의 농지원부 작성에 따른 농지경작사항 및

(추 2)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경작농가의 확인

8. 법 제8조 제2항 및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으로·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9. 농지조서 작성에 따른 경작농지 및 경작농가 확인

10.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11.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 5 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 6 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추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위촉하여야 한다.

제 7 조(위원의제척, 기피 및 회유)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추 2)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배~~^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취소 V3

제9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임차료의 삼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1991. 1. 4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 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1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별표1)

농 지 관 리 위 원 정 수

('93. 12. 9개정)

구분 읍·면	계	읍·면 장	농민대표위원 (행정리·동)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계	175	7	133	35
회천	43	1	37	5
주내	26	1	20	5
온현	18	1	12	5
남	26	1	20	5
광적	20	1	14	5
백석	25	1	19	5
장흥	17	1	11	5

(추 2)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추천서

임차인 대 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임대인 대 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자경농 대 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위 사람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읍(면)리를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리장 주소

성명

①

첨부서류 : 후보자 (임차인대표, 임대인대표, 자경농대표)인적사항 및 영
농현황 1부

(추 2)

제9면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첨부1)

후보자 $\left\{ \begin{array}{l} \text{임차인대표} \\ \text{임대인대표} \\ \text{자경농대표} \end{array} \right\}$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주소지 거주기간	19 . . . ~19 . . .	(년)	
	5. 최종학력	학교 (졸업·중퇴)		
	6. 주요경력			
		7. 소유농지 (단위 : m ²)		
영 농 경 지	전	답	과수원	계
	8. 임차(임대)농지			
	전	답	과수원	계
	9. 영농경력	19 . . . ~19 . . .	(년)	
10. 주재배 작물				

제9편 농림축산 제1장 농림축산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양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지법 개정(1999.3.31 법률 제5948호)시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1조 “임차료상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농지법 제25조
- 농지법 관련 대한민국법률연혁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기존 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